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339 |
|----------|-----|

제안연월일 : 2021. 04. .

제안자 : 평창군수

□ 제안이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조성 및 건강생활의지원 등),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 위탁의 목적

- 아동청소년들의 미래 신체발달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검사 및 영양, 운동 등 체계적인 관리서비스 제공
-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하게 성장토록 유도하고 비만과 흡연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명: 『스마트 건강지킴이 운영』
- 사업기간: 2021년 5월 ~ 12월
- 사업대상: 26개교 2,169명 - 초등 18개교 1,384, 중등 8개교 785명
- 사업비: 179,000천원(군비)
- 주요내용
 -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측정 및 흡연여부 측정 (연 2회)
 - 개인별 건강관리(비만, 흡연, 운동 등) 상담 및 운동서비스 제공

□ 위탁계획

- 위탁사업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예측, 비만, 흡연 관리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1. 12. 31.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학생들의 신체발달 측정 및 흡연여부 측정(연 2회)
 - 맞춤형 건강관리(운동, 식생활 등) 상담 제공
 - 전문 강사를 통한 대면·비대면 운동처방서비스 제공
 - 비만·흡연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실시

□ 향후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 4월
- 위탁 대상기관 심의·선정 : 2021. 5월
- 위탁협약 체결 및 협약 : 2021. 5월

□ 민간 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

- 아동·청소년의 신체발달 측정, 상담, 심리 등 전문적인 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 운동, 식생활 개선, 보건상담 등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참여 만족도와 생활 속 건강실천을 향상에 기여

□ 관련자료

- 관계법령 1부.

| 소관 관·과·소 | | 보건사업과 |
|-------------|-----------------------|-------------------------------|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보건사업과장 김 영 옥 |
| | 담 당 직위·성명 (전 화) | 건강증진담당 윤 해 순 (330-4890) |

관계법령 발췌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검사·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 · 관광 · 체육시설
4. 공원 · 녹지시설
5. 보건 · 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